

법률 자문위원 운영 규칙

제정 2017. 12. 14 제96호

개정 2019. 11. 14 제119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법률 자문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및 위촉 해제) ① 원장은 진흥원 운영과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영, 행정, 노동, 저작권 등 해당 분야의 변호사, 노무사, 저작권 관련 전문가 등을 법률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원장은 필요한 경우 각 호의 방법으로 분야별 법률 자문위원을 3명까지 위촉할 수 있다.

1.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추천
2. 진흥원 법률서비스 프로그램 ‘헬프데스크’ 참여 경험이 있는 전문가
3. 부천시 고문변호사
4. 진흥원 이사회 임원 중 법률전문가
5.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문가

③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원장은 법률 자문위원을 새로 위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위촉된 법률 자문위원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금품수수의 금지, 부당한 알선·청탁의 금지
2. 진흥원과 관련한 이권 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
3. 미공개 정보의 이용 금지
4. 그 밖에 공익에 반하는 활동의 금지

⑤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법률 자문위원의 위촉을 해제하거나 신규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자문을 기피하거나 불성실한 자문을 하는 경우
3. 사망·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자문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기타 진흥원 이익에 반하는 행위로 진흥원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경우
5. 제2조제4항의 규정을 위배하여 진흥원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6. 최근 3년 이내에 법률 위반 등의 사유로 소속 단체 및 기관으로부터 징계를 받

은 경우

제3조(임무) ① 법률 자문위원은 법령 등의 해석에 관한 사항이나 진흥원과 관련한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진흥원의 자문에 응하거나 소송사건을 수임 받아 수행할 수 있다.

② 법률자문위원은 진흥원이 당사자가 되는 사건 등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 또는 소송대리에 응할 수 없다.

③ 원장은 필요할 경우 진흥원의 인사위원회, 헬프데스크 및 기타 자문회의 등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4조(자문수당 등 비용) ① 법률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20만원의 자문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9. 11. 14.>

② 제1항에 따른 법률자문위원의 자문회신 실적이 월 4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건수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1건당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에 의거 별도 합의한 경우에는 초과하는 건수에 대한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급액은 월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3항 제4항의 수당은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⑤ 소송사건 등과 관련된 비용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자문실적대장의 관리) 원장은 별지 서식의 법률자문위원의 자문실적대장을 월 별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2017. 12. 14.. 규칙 제96호)

이 규칙은 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1. 14. 규칙 제119호)

이 규칙은 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공포한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